## 2021년 제14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2호 안건: 주안동 507-1번지일원 주상복합 신축(계획)]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			심의일자	2021.10.12.(서면심의)				
건축종별	[ ○ ]신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				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강현구			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공 지번 507-1 외 대지면적 5,302		구 주안동 관련지번 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일반상업지역						
	건축면적 3,535.98m²		건폐율 66.6889%		층수 지하 : 7층/ 지상 : 40층				
건축물현황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	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구조		건축물 동수 2동				
	최고높이 123.3m		용적률 790.32%		연면적 합계 67,519.74㎡				
심의내용	구 분	심의결과							
	(계획분야)관련	<ul> <li>이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상 우측(6M 도로로 표기된 부분) 도로가 당해 사업지 면적에 포함된 부분은 사업지 면적에서 공제하여야함</li> <li>아사전검토의견 9, 10 관련하여 용역원 휴게실 환경개선 부분과 관련하여 자연채광과 환기가 되는 실 구성이 안 될 경우 태양광 집광시설을 이용해서 지하 용역원 실이나 주민 운동시설이 답답하지 않도록 계획 검토 바람</li> </ul>							
	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거가권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								
	[ ] 원안 의결 <b>[</b> 〇 <b>] 조건부 의결</b>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								
심의결과	*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 (단,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		

## 2021년 제14회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

[3호 안건: 효성동 152-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(구조)]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 도경관건축과			심의일자	2021.10.12.(서면심의)				
 건축종별 	[ ○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 ] 기타								
건축주 	성명(법인명) 동도디앤씨(주)				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								
	지번 152-1번지 외		관련지번						
	대지면적 4,514.00 m²	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				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776.544m²		건폐율	울 17.203%	층수 지하 : 2층/ 지상 : 25층				
	주용도 공동주택(아파트)		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2동				
	최고높이 75.2m		용적률	률 249.926%	연면적 합계 16,151.336㎡				
심의내용	구 분								
	(구조분야)관련	O 의견 없음							
	( 토목분야) 관련	O 의견 없음							
	○ 사전검토의견 반영할 것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거가권 자가 검토·확인하시기 바람 ○ 시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므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함								
심의결과	[ ○ ] 원안 의결 [ ] 조건부 의결 [ ] 재검토 의결 [ ] 부결  ※ <u>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u> 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• 조건부 의결 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								